의 안 번 호	제 296 호
의결 년월일	1994. 7. 7.
의 결 사 항	원안가결

발 의 자	박명수의원외 3 인
제 출 년 월 일	1994. 7. 1.

속리산삼가지구개발청원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수 신 : 의 장

제 목 : 속리산삼가지구개발청원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보은군 번영회 회장 이만재씨가 청원하고 박해종의원이 소개한 속리산삼가지구개발에 대한 청원서를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원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것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함.

제 안 자 : 박 병 수 (인)

(찬 성 서 명 의 원 : 붙 임 참 조)

◇ 제 안 설 명

1992. 8. 26 보은군의회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만장일치로 의결한 속리산국립공원 삼가지구집단시설 반대결의문 채택이후 삼가지구개발을 희망하는 다수인으로부터 여러차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은군의회에서는 개발 그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로인한 환경 피해를 우려한 나머지 반대한 것임을 밝혀두고 삼가지구 1.2.3 지구중 제2지구는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집행기관과 의회간 협의된바 있습니다.

이번 박해종의원이 소개한 청원서 또한 삼가지구 종합개발을 촉구하는 청원입니다만 이번 청원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원을 의결할 경우 지역적으로 개발로 인한 이기주의적 민원이 발생될것으로 예상되어,

본청원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조사하여 지역적으로 민원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기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수를 5명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함.

의 안 찬 성 의 원 서 명

성 명	서 명	(인)
한 성 숙	한성숙	
서 병 기	서병기	
방 장 순	방장순	